

선포합니다.

2. 休會의件(議長提議)

(17時 48分)

○ 副議長 黃泰植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으로 12월 7일 화요일부터 12월 20일 월요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異議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예,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일 동안 구정에 관하여 진지하게 질문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동안 의원여러분께서는 평소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민원해소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집행부측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측에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한 자리에서 구정전반에 대하여 격의 없는 많은 토론을 하였습니다마는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제시한 여러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문제점에 대하여 집행부측에서는 의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보다 책임의식을 가지고 구정발전에 보다 민주적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행정에 많은 기여를 해줄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의원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시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심사숙고하여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충실히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散會를 선포합니다.

(17時 50分 散會)

○ 出席議員(30人)

- | | | |
|-------|-------|-------|
| 金 元 泰 | 黃 泰 植 | 曹 熙 太 |
| 宋 潤 錫 | 金 星 煥 | 朴 炷 緒 |
| 李 天 揆 | 李 鍾 萬 | 李 奉 衡 |
| 具 又 石 | 韓 賢 應 | 金 鍾 烈 |

- | | | |
|-------|-------|-------|
| 沈 載 昶 | 洪 性 煥 | 俞 南 烈 |
| 金 汶 泰 | 李 宗 一 | 鄭 然 宇 |
| 金 相 烈 | 李 康 泌 | 金 東 暉 |
| 蔡 雲 錫 | 尹 東 鉉 | 洪 吉 杓 |
| 田 炳 萬 | 李 仁 求 | 尹 正 鏞 |
| 金 裕 顯 | 尹 明 奎 | 權 五 範 |

○ 出席公務員

- | | |
|-------------|-------|
| 區 廳 長 | 李 慶 培 |
| 副 區 廳 長 | 潘 尙 均 |
| 總 務 局 長 | 河 永 基 |
| 財 務 局 長 | 池 榮 昌 |
| 市 民 局 長 | 姜 信 在 |
| 都 市 整 備 局 長 | 申 水 木 |
| 建 設 局 長 | 姜 昌 求 |
| 總 務 課 長 | 李 春 基 |
| 企 劃 豫 算 課 長 | 金 鎮 澤 |
| 保 健 行 政 課 長 | 俞 泰 鳳 |

(參照)

구정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

■ 구정질문을 통해 제기된 '스포츠시티' 사항에 대해

그동안 '스포츠시티'에 대한 지도관리를 통해 파악되고 있던 사항과 1993. 12. 9일 위생과와 합동 점검 결과를 토대로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이용료심의위원회에서 이용료심의 결정이 부당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과 체육시설업 이용료 신고업무 처리지침에 의거,

1992년 9월 7일 스포츠시티에서 등록신청서를 접수함에 따라 동년 9월 16일 이용료 심의결정을 이용료심의위원회에 의뢰하여 동년 9월 17일 이용료를 심의 결정하였다. 당시 심의자료로 9개 업소의 개업년도, 시설수 등을 종합 비교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투자비 내에서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투자비 총 14,774,159,000원의 범위 내에서 모집금액을 13,926,500원으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1차, 제2차, 제3차 회원모집을 승인하여 주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 18조(이용료 또는 관람료))

그 세부내역은 별첨 1과 같다.

2. "특별회원"에 대하여

스포츠시티의 특별회원이란 회사와 회원간의 명칭으로 개인회원일 경우 일시불로 1,200만원(입회비, 보증금 포함)을 지불하고 연회비가 없다. 따라서 이는 소위 특별회원에게 회사측에서 특혜를 준 것이며 이용료심의위원회에서 승인한 이용료 보다 연회비 면제 등을 볼 때 실재는 낮은 것이다.

이는 회사측 입장에서 볼 때 큰 손실을 가져오고 반면에 회원에게는 이익이 되는 것으로 회원들간에 속칭 특별회원으로 교체하려는 요구가 많으나 회사측에서 거절하고 있는 형편이다.

현재 특별회원은 59구좌가 있다. 이는 사업계획 승인 이전에 회원을 빨리 모집하려는 상기술로서 일부 회원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니다.

3. "목천탄산수 통안에 지하수를 넣어 회원들에게 제공했다"에 대하여

지하수를 제공한 바는 없으며 수도물을 정화시켜 목천탄산수 통안에 넣어 회원들에게 제공했다. 이는 회원들로 하여금 수도물을 목천탄산수로 오인하게 한 것은 사실이나 "보건위생상 무해한 음용수를 비치하여야 한다"는 위생기준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처분 대상은 아니며, 현재는 목천탄산수라는 글자를 지우고 해명서를 쓰도록 조치했다.

4. "골프연습장 등의 부대시설인 캐비닛의 사용료를 받는다"에 대하여

회원일반에 대한 락카실은 현재 별도로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골프연습장 등의 사물함에 대하여 원하는 회원에 한하여 사용료를 받고 열쇠를 개인이 소지하여 자신의 귀중품 및 운동기구를 보관케하는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가 없어 행정처분의 대상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여러 의원들의 지적이 있어서 상

부기관에 질의후 조치하고자 한다.

5. "캐비닛 등의 부대시설 사용에 대한 세금징수는 철저히 되었는가"에 대하여.

캐비닛 등의 부대시설 사용료는 영업소득의 하나로 국세 징수 대상이다. 따라서 이는 국세청 소관 사항으로 구청의 업무영역을 벗어나는 것이다.

참고로 부대시설 사용료에 대한 세금징수는 세무서에 의해 철저히 징수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6. "체육시설업 지도관리가 철저히했는가"에 대하여

상·하반기 연 2회 정기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문제의 소지가 있는 체육시설업에 한해 수시지도점검을 하고 있다.

스포츠시티의 경우 수영장수질검사를 6~8월에는 주1회, 그 외에는 월 2회씩의 지도 점검을 하고 있다.

7. "구 공무원이 스포츠시티 회원으로 있는가"에 대하여

스포츠시티로 부터 회원 명단을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없다.

8. "회원의 동반자인 경우 목욕탕을 포함한 1일 이용료가 14,000원인데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가"에 대하여.

1993년 3월 감사원 감사에 의해 목욕탕을 복합목욕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증과세가 부과된 후 회원 동반자 이용이 없어졌다. 단, 문화체육부의 정책적인 지침이 회원제 종합체육시설업을 대중 종합체육시설업으로 전환시키고자 하여 회원제에서도 일반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침상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일반인의 회원제 종합체육시설업 이용은 위반이 아니다.(체육 82130-249('93.3.22), 체육 25940-232('92.3.13))

9. "사업계획 변경 및 등록 변경이 여러번 있었는데 이에 대한 의혹은 없는가"에 대하여.

사업계획 변경 및 등록 변경은 필요시 당연히 하여야 할 체육시설업자의 의무이다. 오히려 사업계획 변경 및 등록 변경을 필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

한다면 법에 저촉된다. 변경내역은 1992년 8월 17일 사업계획상의 지상4층 당구장, 지상6층 골프연습장으로 계획하였으나 이를 제외하고 상호변경 등의 변경 사유가 생겨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해주었다. 1992년 12월 17일 골프연습장 업종추가, 수영장 내 탈의실의 일부 면적을 이용소로 용도변경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을 하였다. 이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등록변경 되었다.

정당하게 신청한 사업계획 및 등록변경에 대한 적법한 처리가 이루어 졌으며 그 횡수는 문제되지 않는다. 스포츠 시티의 경우 두번의 변경이 있었을 뿐이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제7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10. “준회원(1년, 6개월)의 문제점은 없는가”에 대하여.

준회원이란 제도는 '93년 6월부터 시행한 제도로 1년 또는 6개월간 이용하고 난 후 회원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본인의 뜻에 따라 기간이 지난 후 회원가입 의사가 있으면 잔액을 지불하고 회원으로 가입하는 제도이다.

이는 회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항이 아니고 또한 법규에 제한규정이 없어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다.

또한 준회원은 정식회원으로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어 문제점이 없다.(체육 821 30-62('93.1.18) : 회원이 아닌 일반이용자로부터 일.월.년 이용료를 선납받아 운영 가능)

11. “입회금 반환 여부”에 대하여.

입회비·보증금 문제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령에 규정이 없다. 따라서 입회비를 돌려주어야 한다는 근거는 없으며, 입회비와 보증금 중 입회비의 비율을 낮게 하는 것이 회원들에게 유리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스포츠 시티는 그 비율을 평균 10.8%로 하였다. 단, 여전히 입회비의 반환문제가 논란이 있어 법률개정 작업중이다.

12. “운영위원회 구성을 회사측에서 방해하

고 있는데 대한 문제점은 없는가”에 대하여.

체육시설업 관련법령에 운영위에 대한 규정이 없다. 다만 이러한 체육시설업 세부운영에 대한 법규정미비로 문화체육부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령 개정 중이다.

스포츠 시티의 경우 운영위원회가 기존에 구성되어 있었고 그후 기존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불만이 있는 회원들이 운영위의 재구성을 요구하여 새로운 운영위가 구성되는 과정에서 회사측과의 마찰이 있었다.

이에 따라 생활체육과에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지속적인 증재를 했으며 현재는 양자간의 협상이 진행되어 원만히 해결되었다.

행정지도와의 행정처분 등의 행정적 개입은 근거가 없어 한계가 있다.

13. 담당과(생활체육과)의 종합적 의견.

• 체육시설업은 1989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자유업에서 신고 및 등록업체화 되었다.

• 체육시설업의 지도관리는 규제위주가 아니라 지원육성하는 측면에서 이루어 지도록 하는 것이 문화체육부의 정책적 지침이다.

• 체육시설업 관련 법령의 미비 신고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운영상의 지도관리에 대한 사항은 규정이 미비하다. 따라서 체육시설업 운영상에 속출하고 있는 여러 현안에 대해 해석이 다양하며 지도관리의 지침이 없어 애로점이 있다. 이에 따라 법률개정작업중에 있다.

• 이용료 신고의무가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정기국회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93. 12. 16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공포 예정이다. 그 개정골자는 이용료 신고 의무폐지, 기타 운영상의 규정 미비점 보완이다. 그 세부적 내용은 별첨 2와 같다.(관보 '93. 8. 28)

이러한 연유에서 구정 질의시 문제점으로 제기된 여러 항목중, 사실과 다른 것을 제외한 속칭 “특별회원”, 부대시설 사용료 징수, 1일 회원, 준회원, 입회금 반환여부, 운영위원회 구성 문제 등은 지금현재의 법령에 의해서는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니다.

또한 사실과 다른 내용이 구정 질문과정에서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소문과 실제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 금번 정기국회에서 상정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어 이용료에 대한 행정관청의 관여는 차단되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가격은 형성될 것이며, 그동안 여러 해석을 두고 논란 거리가 되었던 회원과 회사의 관계가 정비될 것이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93. 12. 16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 통과되었다. 우선 급한대로 국회 사무처를 통해 FAX 보고 받았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시설 설치 의무규정, 회원모집규정, 회원의 보호규정, 체육시설의 이용 질서, 체육시설의 이용료 신고의무 폐지 등이다. 이의 후속조치로 곧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세부적인 체육시설업 지도관리 지침이 마련될 것이다.

14. 위생과와의 합동지도점검 실시

'93. 12. 9.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골프연습장에 이동식 난방기구사용, 수영조의 바닥청소 불량 등이 적발되어 기 행정처분함.

■ 1993. 12.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 통과된 「體育施設の 設置・利用에 관한 法律改正法律案」의 주요개정내용

- 제 4 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시설 설치·운영 의무 규정
- 제 19 조 : 체육시설업의 회원모집에 관한 제한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 됨.
- 제 20 조 : 회원자격의 양도·양수, 입회금액

의 반환, 회원 대표기구 등을 회원 권익보호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제 23 조 : 체육시설의 이용을 당해 체육시설업자와 회원간에 약정한 바에 따르도록 함.

- 제 25 조 : 체육시설의 이용료 신고의무 폐지, 이용료 게시토록 함.

이상과 같은 내용을 가진 동 법률은 '94. 1. 1일 공포 예정이며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30일 경과한 후인 '94. 2. 1일부터 시행될 예정.

또한 동 법률의 후속조치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될 것임.

- 그간 여러 의원님들께서 예리하고 정확하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령의 미비점까지 파악하여 체육시설업 지도관리의 사각지대를 지적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이제는 의원님들의 사려깊은 비판이 법령의 개정에까지 이르렀으므로, 향후 새로운 법령이 공포 시행되면 체육시설업의 지도관리가 보다 세련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별표 1)

모집예정회원 및 모집금액, 연회비 산정내역

1. 모집예정회원수 및 금액

가. 1차 회원모집(91. 06-92. 02)

(단위: 원)

구 분	구좌수	입 회 비	보 증 금	가 입 비	소 계
개인회원	380	1,000,000	5,500,000	6,500,000	2,470,000,000
부부회원	150	2,000,000	9,550,000	11,550,000	1,732,500,000
자녀회원	10	1,000,000	3,150,000	4,150,000	41,500,000
법인회원(2)	30	2,000,000	9,300,000	11,300,000	339,000,000
법인회원(3)	10	3,000,000	12,100,000	15,100,000	151,000,000
소 계	580				4,734,000,000

나. 2차 회원모집('92. 09-'92. 12)

(단위: 원)

구 분	구좌수	입 회 비	보 증 금	가 입 비	소 계
개인회원	400	1,000,000	7,800,000	8,800,000	3,520,000,000
부부회원	175	2,000,000	12,000,000	14,000,000	2,450,000,000
자녀회원	10	1,000,000	4,000,000	5,000,000	50,000,000
법인회원(2)	30	2,000,000	12,000,000	14,000,000	420,000,000
법인회원(3)	5	3,000,000	15,000,000	18,000,000	90,000,000
소 계	620				6,530,000,000

다. 3차 회원모집('93. 03-'93. 06)

(단위: 원)

구 분	구좌수	입 회 비	보 증 금	가 입 비	소 계
개인회원	145	1,000,000	8,900,000	9,900,000	1,435,500,000
부부회원	60	2,000,000	13,500,000	15,500,000	930,000,000
자녀회원	10	1,000,000	4,400,000	5,400,000	54,000,000
법인회원(2)	10	2,000,000	12,800,000	14,800,000	148,000,000
법인회원(3)	5	3,000,000	16,000,000	19,000,000	95,000,000
소 계	230				2,662,500,000

(단위: 원)

총 계	1,430				13,926,500,000
-----	-------	--	--	--	----------------

2. 이용료(연회비) 내역

(단위: 원)

구 분	연 회 비	입 회 비	부 가 세	계
개인회원	800,000	1,000,000	180,000	980,000
부부회원	1,500,000	2,000,000	350,000	1,850,000
자녀회원	700,000	1,000,000	170,000	870,000
법인회원(2)	1,800,000	2,000,000	380,000	2,180,000
법인회원(3)	2,600,000 ※	3,000,000	560,000	3,160,000

■ 심의요구부서 검토내용

- 신고된 이용료가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조정(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3항)할 수 있는데, 본 심의대상업소는 신규 사업체이기 때문에 유사업소의 이용료 현황을 비교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타업소의 수용인원과 이용료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음.

- 수용인원 현황

업 소 명	전용면적	회 원 수	구 좌 수	1인당 전용면적	비 고
	평	명	구좌	평/인	
롯데스포츠	2,542	3,000	1,500	0.85	
코오롱스포츠	2,978	3,000	1,600	0.99	
63 헬스클럽	968	2,200	700	0.44	
거평메디스	1,600	2,000	1,300	0.80	
나산스포츠	1,100	2,000	1,200	0.55	
대호헬스랜드	900	1,500	800	0.60	
스포츠시티	1,967	2,000	1,400	0.98	

* 1인 0.8평인 경우 쾌적한 공간 유지가능 함.

• 이용료 모금현황(1인당 기준)

- 총 이용료 비교현황

(단위:천원)

업 소 명	개 인	부 부	가 족	법 인	시 설 명	비 고
(주)나산스포츠	6,960	5,451	3,752	6,800	수영장, 체력단련장, 미용제조장, 골프연습장(4)	개업년도 '90
인터콘티넨탈호텔	7,348	4,900	4,656	6,662	수영장, 체력단련장 미용제조장(3)	'88
라마다르네상스호텔	7,515	5,429	6,544	6,816	수영장, 체력단련장 미용제조장, 골프연습장(4)	'88
리베라호텔	5,679	3,894	1,789	4,295	수영장, 체력단련장 미용제조장(3)	'90
ABC스포츠가든	6,300		4,348	6,300	수영장, 체력단련장 미용제조장, 골프연습장(4)	'87
삼풍스포츠센터	7,600	5,950	8,755	6,500	수영장, 체력단련장 미용제조장(3)	'88
대호헬스랜드	9,660	7,200		6,950	수영장, 체력단련장 미용제조장(3)	'92
롯데월드스포츠	11,500	7,750	10,500	7,666	수영장, 체력단련장 미용제조장, 볼링장, 당구장, 골프연습장(6)	'88
스포츠시티	9,380	7,765	5,720	7,212	수영장, 체력단련장 미용제조장, 볼링장, 골프연습장(5)	

- 질문의원 : 총무재무위원회 윤정용의원
- 질문요지 : 보건소 행정 서비스에 관하여
- 답변내용 :

1. 보건소 찾아오는 진료만 하지말고 주민을 찾아가는 서비스 진료는 할 수 없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서면으로 답변드립니다.

일반여건으로는,

- 현재 3개과 9개 계가 있으며, 현원 71명이며, 이 중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5명, 약사 3명, 간호사 22명, 보건관련 기술직 41명이 있습니다.

- 장비는 의료장비, 차량등 75종의 170여대를 활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 관내 의료보호 대상자로는 총 3,407세대 9,776명이 있습니다. 현재 주민을 찾아가서 실시하는 서비스 진료사업은 이동순회진료, 방문진료, 방문간호사업 3가지가 있습니다.

- 추진방법으로서는, 이동순회진료는 의사, 약사, 간호사등 7명을 1개반으로 편성하여 매주 1회씩 전 주민을 대상으로 진료하고 있으며,

- 방문진료는 의사, 간호사 1개 진료팀이 매주 2회씩 저소득층의 거동불편환자를 가정방문하여 진료,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 방문간호사업은 지역담당 간호사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매일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지도와, 환자에게는 적절한 가정간호를 해주며, 문제가정은 유관기관과 자매결연, 봉사단체의 구호요구, 가정생활의 애로사항등을 해당기관과 연계 처리하여 주는등, 자활의욕을 심어주는 보건교육과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금년도 진료한 내용으로는

- 이동순회진료 72회를 실시하여, 연인원 7,126명을 진료하였으며,

- 방문진료는 442명을 연인원 7,505명을 진료 실시했습니다.

- 방문간호사업은 4,519가구를 방문하여 1,228명 가정간호를 실시했습니다.

- 진료한 질병별 내용으로는

신경통, 감기, 고혈압, 위장질환, 당뇨병

등이 있습니다.

- 보건소 각 진료과 합동 이동진료 행정 서비스에 애로점으로서는

- 일반행정 기관으로서의 1차진료 기관임으로 총 행정력을 이동진료에만 집중하여 실시하기에는 애로가 있으며,

- 이동순회 진료반을 전담 시행하는 경우, 보건소에 찾아오는 환자들의 진료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으며,

- 불특정인에게 일시적인 진료효과는 있으나, 의료보호환자의 계속 추구관리에 미흡에 예상됩니다.

-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보다 효과적인 보건행정서비스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추진방안은

- 현 진료회수를 확대하여, 이동순회 진료는 주1회에서, 주2회로 적극 실시하며

- 특히, 노인층 인구증가에 따른 퇴행성 노인질환을 진료하기 위하여 물리치료실을 확보하였고, 이에따른 예산 3,300만원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으므로 '94년도 3월까지의 물리치료업무를 실시하는 등, 보건진료 서비스 전반에 관한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전직원이 노력하겠습니다.

- 질문의원 : 총무재무위원회 윤정용의원

- 질문요지 : 노인복지 문제에 관하여 노인복지회관 운영계획에 관하여

- 답변내용 :

1. 노인복지 문제에 관하여

우리구 전체 인구의 4.5%를 차지하는 65세 이상 노인인구수는 19,350명으로 점차 고령화 추세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노인들의 휴식공간인 67개소의 노인정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94년에도 2개소의 노인정을 건립할 계획이며, 특히 노인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거리를 마련하고자 7개소의 노인공동작업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점심을 거르시는 결식노인분들을 위하여 경로식당을 현재는 1개소를 운영하고 있

지만 '94년도에는 1개소를 추가로 운영하여 1일 약 120명의 결식노인분에게 무료로 점심을 제공할 계획이며 노인무료 건강진단 및 할아버지봉사대등 각종 노인복지사업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 노인복지회관 운영계획에 관하여 설명드리면

- 시설명 : 노인복지회관
- 위 치 : 마포구 용강동 115-5
- 규 모 : 대지 289m²
건물 389m²

※ 지하1층, 지상3층(철근 콘크리트조)

- 건물내역

- 지하1층 : 독서실, 체력단련실, 샤워실, 관리실 등
- 지하1층 : 노인복지회사무실, 지회장실, 간이부엌 등
- 지상2층 : 노인교실, 창고 등
- 지상3층 : 할아버지노인정, 화장실, 보일러실 등

- 건립완공 예정일 : '94. 1. 30.

- 운영계획 : 마포구 관내 노인들의 여가선용 및 취미생활에 보탬이 되는 노인교실 및 체력단련실을 운영하여 노인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 질문의원 : 이강필 의원
- 질문요지 : '93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현황
- 답변내용 :

1. '93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현황

단위 : 천원

기업체명	용자 신청액	대출내용		비고
		대출일자	금액	
영지체책사 (김홍배)	100,000	93. 9. 27	100,000	
우리인쇄사 (김채식)	100,000		0	담보제공 여력부
삼문인쇄(주) (곽득용)	100,000	93. 9. 27	100,000	
금영문화사 (한용근)	50,000	93. 9. 27	50,000	
신양통상 (최중화)	100,000	93. 9. 27	100,000	
(주)정흥기업 (홍성현)	100,000		0	담보제공 여력부
동서콘크리트(주) (전준미)	50,000	93. 10. 23	32,000	
계	600,000		0	"미대출액" 218,000

2. 제2차 중소기업육성자금 용자 계획
- 1) 용자지원금액 : 미대출액 218,000만원
 - 2) 용자신청기간 : '93. 12. 6. ~ 12. 10.
 - 3) 용자신청자 현황 : 화신지공사의 9개사
 - 4) 마포구 중소기업육성자금운용위원회 개최 : 93. 12. 22(15:00) 부구청장실

- 질문의원 : 총무재무위원회 이강필의원
- 질문요지 : 복지시설물은 각동에 형평성있게 건립되는지?
- 답변내용 :

1. 현황 : 별첨
2. 가정복지 시설물 설치는 지역 형평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3. 구립노인정이 없는 아현1동, 아현3동, 도화1동, 동교동중 아현1동은 금년에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내년도 예산으로 건립 추진중이며 동교동은 현재 공원안에 있는 마포어린이집을 동교동 관내 다른 장소로 이전 신축할 계획이며 현건물(어린이집)은 보수하여 노인정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아현3동, 도화1동은 사립노인정이 2개소씩 있어 노인들 사용엔 불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노인정 건립계획시 최우선적으로 건립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4. 구립 어린이집이 없는 동은 10개동이며, 금년중 도화1동, 망원1동 어린이집을 건립 추진중에 있으며, '94년도에는 성산1동 어린이집을 건립하고 서교동과 동교동은 부지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가정복지 시설 효율화를 위하여 어린이집과 노인정을 함께 쓸 수 있는 복합시설을 건립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향후에는 지역 형평을 고려하여 복지시설이 없는 동에 우선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 구립 어린이집 없는 동

- 아현1동, 아현3동, 공덕2동, 도화1동, 도화2동, 대흥동, 서교동, 합정동, 망원1동, 성산1동

가정복지시설 현황

구분 동명	총계	노인정수			어린이집수			비고
		소계	구립	사립	소계	구립	민간	
계	91	67	30	37	24	18	6	
아현1동	1	1		1				
아현2동	2	1	1		1	1		
아현3동	2	2		2				
공덕1동	2	1	1		1	1		
공덕2동	5	5	2	3				
신공덕동	3	2	1	1	1	1		
도화1동	2	2		2				
도화2동	3	3	1	2				
용강동	5	3	2	1	2	1	1	
대흥동	4	4	2	2				
염리동	8	5	2	3	3	1	2	
노고산동	3	2	1	1	1	1		
신수동	5	4	1	3	1	1		
창전동	4	2	1	1	2	2		
상수동	5	4	2	2	1	1		
서교동	1	1	1					
동교동	2	1		1	1	1		
합정동	3	3	1	2				
망원1동	4	3	1	2	1		1	
망원2동	3	2	2		1	1		
연남동	4	2	2		2	1	1	
성산1동	2	2	1	1				
성산2동	9	6	3	3	3	3		
상암동	9	6	2	4	3	2	1	

- 질문의원 : 권오범 의원
- 질문요지 : 동절기 난지도 조립식주택에 대한 화재예방 계획 및 주민관리
- 답변내용 :

1. 일반현황

○ 조립식 주택 주민현황

당 초	영구임대 주택입주	현재 거주세대	비 고
957세대 3,402명	144세대 513명	811세대 2,887명	2세대사망 으로 공가

○ 조립식 주택 생활보호자 현황

계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의료부조자
56세대 153명	8세대 10명	37세대 107명	11세대 36명

2. 주민관리(생계관리) : 구

○ 생활보호자 관리

- 거택보호 법정관리

- 쌀 : 1만/월 10kg
- 보리 : 1인/월 2.5kg
- 부식비 : 1인/1일 700원
- 연료비 : 가구당 1일 450원(월동기 675원)
- 장의비 : 250,000원

- 자활보호

- 쌀 : 1인/1일 340g 월 20일 이내(긴급 구호)

- 이재민 구호

- 긴급구호 : 7일간(1인/1일 1,321원)
- 장기구호 : 60일간(1인/1일 1,219원)

○ 일반주민관리

- 취로사업비 추가 배정 : 3,653천원

3. 화재 예방(청소사업본부 소관업무)

○ 청소사업본부 조치 사항

- 유관기관 합동 점검 실시(난지도관리 사업소 주관)

- 점검일시 : '93. 10. 21.~10. 30.

- 5개 기관(난지도관리사업소, 마포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마포구청)

- 점검분야 : 소방시설, 전기시설, 가스시설, 기타 안전 사고예방교육 및 홍보

※ 소요예산 8,300천원(한국전기안전공사 수수료)

○ 마포소방서 조치 사항

- 소방차와 유사한 성능을 가진 소방호수 등의 장비를 갖추어진 비상소화장치함 3개소 설치('93. 7월 중순)

- '93. 10. 7. 화재 발생전 자위소방대 조직 1개대 42명이었으나, 비상소화장치 설치장소 중심으로 3개대 126명으로 재편성 관리하고 있으며 매분기 1회씩 지역주민 대상으로 소방훈련 실시(소방서)

- 마포소방서 특별소방대책수립 화재예방 경계활동 강화

4. 기타 사항

- 난지도 조립식주택 입구(동남교통 ↔ 서

부운전면허시험장)까지 도로개설공사 급
년말까지 완공계획
성산 소방파출소 1km 지점까지 신속
출동 기대

- 소방서에 건의(구)
- 소방초소 설치 및 소방차 상주

- 질문의원 : 권오범 의원
- 질문요지 : 농지관리위원의 임무와 농지관리위원 명단 요망
- 답변내용 :
 1. 농지관리위원 임무(근거 : 농지임대차 관리법 참조)
 - ① 농지지역에서 적용될 임차료의 상한 심의
 - ② 임대차 계약 당사자의 분쟁조정
 - ③ 농지에 관상수를 재배하는 경우 사실 확인
 - ④ 기타 농지 및 농지임대차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 등 농지의 합리적이용에 관한 사항 심의 또는 건의할 수 있음.
 - ⑤ 관할지역안의 농지거래 상황의 확인
 2. 농지관리위원 위원회 위원 명단(근거 : 농지임대차 관리법 제16조)

소속	성명	생년월일	주 소	비고
농촌지도소	김동익	50. 7. 2.	송파구 잠실동 44	부의장
서부농협	조원철	45. 3.28.	은평구 신사동 140	
성산 2동	이귀성	31. 7.24.	마포구 성산동 479	
〃	정복수	31.11. 6.	마포구 성산동 산53	
〃	정준모	35. 8.23.	마포구 성산동 505	
〃	이문갑	29. 3. 5.	마포구 성산동 498-1	
상암동	이문기	44.12. 1.	마포구 상암동 387	
〃	이준모	35.11. 7.	마포구 상암동 344-3	
〃	허 면	45. 1.30.	마포구 상암동 763	
〃	박완준	44. 6. 1.	마포구 상암동 407	
마 포 구	시민국장			의장

- 질문의원 : 도시건설위원회 김동휘 의원
- 질문요지 : 가스판매업소수 및 용기사용기간, 처리방법, 처리건수등의 용기관리에 관하여
- 답변내용 :
 1. LP가스 판매업소수는 ?
- 25개소
* 일반가스(산소, 수소 등) 판매소 3개소 포함 전체 판매업소는 28개소
 2. LP가스용기 사용기간은 ?
- 최초 생산 출고하여 4년 사용후 검사, 이후로 매3년마다 용기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용기최대 수명은 10년임.
 3. LP가스용기 처리방법은 ?
- 검사용기의 검사결과 불합격된 용기는 한국가스안전공사(경기지사)에서 폐기처리하고, 10년 경과후는 가스충전소에서 임의 폐기처리함.(천공파기)
 4. LP가스용기 신고처리건수는 ?
-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가스충전소에서 폐기처리하므로 정확한 숫자파악은 곤란하나,
- 현 전국 유통량(1,300만개)중 1년에 약 30%(400만개) 검사를 실시하고 그중 10%(40만개)정도를 폐기처리하고 있음.
 5. LP가스용기 관리상 위험성에 대한 대책은 ?
- 정기적(연3회) 또는 필요시 수시로 지도점검하여 용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
- 점검결과 위반사항 적출시는 1차 시정 명령, 2차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함.
- 질문의원 : 총무재무위원회 윤정용 의원, 윤동현 의원
- 질문요지 : 난지도 자원회수시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답변내용 :
(사업개요)
위치는 마포구 상암동 1563번지 일원이며 사업시행 부지면적은 약 46,500평이고 사업시행 기간은 '92. 10. 1.부터 '97. 12. 31.까지이며 주요시설은 소각시설, 재활용시설, 공원

조성, 체육시설, 수영장, 도서실등 복지시설로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지

- 위치: 상암동 1563번지 일대
- 면적: 165,000m²
- 도시계획: 폐기물 처리시설

2. 건설개요

- 건설규모: 2,700톤/일
- 처리구역: 마포구, 중구, 용산구
- 건설기간: '92. 10~'97. 12
- 시설개요: 소각시설, 재활용시설, 공원조성, 체육시설, 수영장, 도서실등 복지시설

<추진사항>

'92. 10. 1.에 마포자원회수시설 기본계획 용역발주가 있었고, '93. 6. 1. 마포구청 강당에서 추진된 주민설명회시 주민들로부터 반대 의견이 있었고 이러한 내용을 청소사업본부에 전달하였으며, '93. 7. 31.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되었으며 일정별 세부추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77. 8. 3.: 도시계획시설 결정
2. 92. 10. 1.: 마포자원 회수시설 기본계획 용역발주
3. 93. 4. : 환경영향평가 초안 및 주민 의견 수렴
4. 93. 5. 12.: 환경영향 평가서 초안 공람 공고(한겨레신문, 서울경제신문)
5. 93. 5. 15.~6. 5.: 마포구 주민의견 수렴공고
6. 93. 6. 1.: 마포구청 강당에서 주민설명회
7. 93. 7. 31.: 기본계획 용역완료

<향후계획>

'94년 본청예산에 본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은 것을 볼때 내년도에는 본격적인 추진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본건사업에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수시로 본부에서 전달하고 의견조정 등에 열성을 다하고자 합니다.

○ 질문의원: 가정복지과 윤동현 의원

○ 질문요지: 알뜰장은 매월 실시해야 되는 이유?

○ 답변내용:

○ 알뜰장 운영은 90년 3월에 일반주부들의 과소비 풍조 억제와 근검절약하는 생활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 새마을부녀회 주관으로 각구에서 일정한 장소를 확보하여 매월 실시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운영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가정에서 안쓰고 보관하고 있는 물품 즉, 가전제품, 완구류, 헌책 등과 중고의류를 꼭 필요한 사람에게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도록 하는 장터입니다.

처음에는 운영이 잘되었으나 오랜 세월 수집함으로써 현재는 중고의류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93년도에는 1회에 8개동씩 연7회 운영을 하고 있어 현재로는 1개동에서 3개월에 한번씩 돌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소득 시민이 꼭 필요한 물건을 아주 싸게 구입하는 차원이고 서울시 전구가 실시하는 사항이며 쓰레기 감소 일환으로라도 현재 안쓰는 물건을 꼭 필요한 저소득시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제도는 꼭 있어야 할 사항으로 다소 물건수집에 애로가 있을 줄 사료되오나 서울시와 협의해서 94년도에는 회수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질문의원: 김성환 의원

○ 질문요지: 동 청소년지도자 협의회 회장만 있는데 계속 존속 여부?

○ 답변내용:

○ 동 청소년협의회 구성

1. 관련법규: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4조에 의거 동별로 10인 이내로 구성

2. 임무

- 1) 청소년의 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 2)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
- 3) 청소년 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4)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의 조성 및 유해환경의 정화 활동

3. 운영

각 동별로 회장이하 10명이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장을 위시하여 운영이 잘되는 동은 잘되고 있으나 일부 동은 부진하므로 '93. 12. 1일자로 각동에 조직정비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여 현재 정비중에 있으며 앞으로 계속 잘 운영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